25애니메이션제작지원(초기본편) 공고문

사업개요

o 사 업 명 : 25애니메이션제작지원(초기본편)

ㅇ 사업목적 : 국산애니메이션 성공 사례 발굴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7개월 내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No	구분	내용		
1	지원 규모	① 선정 : 15개 내외 과제 * 24년도 경쟁률 4.8:1 ② 최대지원금(지원과제 당) : 1억원		
2	지원 대상	○ 국산 애니메이션을 기획 및 창·제작하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애니메이션업자로서 사 업자등록을 필한 자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발급 안내】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①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발급 해야 한다. * 주관기관은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제출 필수이나 참여기관은 해당없음 *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관은 최대 1개 기관까지 가능		
3	지원과제	① 프리프로덕션이 끝나고 메인프로덕션을 시작하는 단계의 프로젝트 * 기획·개발 후 초기 본편 영상 제작 단계의 프로젝트이며, 트레일러 제작지원이 아님 ② IP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로 지정된 프로젝트 *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지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함 * 제작완료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③ 접수 마감일 기준 국내·외 방영이 50% 미만인 프로젝트		
4	지원 시 제출물	① 시나리오 10분 이상 ② 제작 바이블(아트웍 캐릭터 포함) ③ 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평가자료 일체		
	지원과제	① 시리즈 ② 영화		
5	산출 결과물	· 시나리오 60분 · 시나리오 완본		
	최소 기준	· 애니메이션 영상 3분 이상 (인트로·엔딩 제외) · 애니메이션 영상 3분 이상 (인트로·엔딩 제외)		
6	총사업비 구성 및 자(기)부담금	○ 총 사업비(=지원금+(사업)자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자(기)부담금 의무 [예시] 총사업비 100원 = 지원금 90원 + 자(기)부담금 10원 * 자(기)부담금 ≥ 지원금 / 9 * 자(기)부담금은 현금만 인정하며 현물 불인정 * 자(기)부담금은 선집행 준수 원칙을 고려해 예산집행 계획 수립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사업비 활용 범위	① 메인 프로덕션 시작 단계의 애니메이션 제작 관련 제반 비용 ② 제작인력 인건비, 작품 제작비(임차료, 일반용역비, 일반수용비 등) [내부인력 인건비 편성 시 유의사항] 연건비(*)		

신청서 접수기간

- ㅇ 공고기간 : 2025.02.20.(목) 2025.03.07.(금)
- o 접수기간: 2025.02.20.(목) 2025.03.07.(금) 15:00까지(e나라도움 시스템 시간 기준)
- * 접수기간 외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하니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 마감일에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o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평가자료를 1개의 압축파일로 첨부하여 e나라 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 파일명: 애니초기본편_e나라도움접수번호_주관기관명
 - * 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이메일 등 e나라도움을 제외한 신청서 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ㅇ 평가자료

【평가자료 제출 유의사항】

- ㅇ 평가자료 중 <지정양식>은 작성가이드 및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작성
- ㅇ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로 평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o 평가자료 중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거나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 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음
- o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질 수 있음

구분	양식	평가자료
	TLSOFY	01) 시나리오 10분 이상
	자율양식	02) 제작 바이블(아트웍 캐릭터 포함)
	TITIOFIL	03) 신청서
		04) 수행계획서
필수		05) 세부산출내역서
<u> </u>	지정양식	06) 지원사업참가기준 체크리스트
		0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08)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HL7 LL2	09)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서류	10) 애니메이션사업자 신고증
	지정양식	11) 콘진원 주요행사 또는 시상식 수상작 사용 권리 확인서
	1001	12) 애니메이션 부트캠프 수료작 확인서 13) 콘진원 주요행사 또는 시상식 수상작 사용 권리 계약서
		14) 애니메이션 부트캠프 수료작 사용 권리 계약서
선택		15) 국내외 마케팅 계획, 부가사업 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
	자율양식	16) 저작권, 배급, 방송편성 등 주요 관계자와의 계약서
		17) 해외투자계약서, 해외공동제작계약서, 해외유통/배급계약서
		18) 기타(지원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등)
서면평가 통과한 발표평가 대상에게 추가 안내		① 기업신용평가 조회를 위한 서류
		② (해당 시) 참여인력 지역 근무 확인서류
		③ (해당 시) 표준계약서 활용실적 계획(또는 증빙)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o 선정절차 안내

1) 서면평가

- (평가방법) 접수 완료한 과제 대상으로 서면평가
- (점수산출) 서면평가 개별 평가위원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을 득한 과제 중 고 득점 순으로 지원규모 2배수 내외에 한해 발표평가 참여 기회 부여
- * 지원규모 2배수 이내로 접수될 경우, 서면평가를 겸한 발표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평가기준 적용 예정 (종합점수는 서면평가 가중치 미적용하여 발표평가 점수와 동일한 것으로 갈음)
- (평가기준) 과제기획력(35점), 과제내용(35점), 참여인력(20점), 사업비(10점) 총 100점 만점(총점 외 가산점 최대 4점)

평가지표		교기하다	ᄪᅑ
구분지표	세부지표	평가항목	배점
	과제 이해도	목표 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10
과제기획력(35점)	기획 독창성	기획된 과제의 차별성과 참신성	10
,	기획 완성도	기획안의 착수 개시가능 수준의 구체성, 현실성 확보여부	15
	독창성	작품 내용이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10
과제내용(35점)	대중성(상업성)	일반 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	10
	완성도	질적으로 완성된 정도	15
차여이려(20전)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애니메이션 제작) 수행경험 여부	15
참여인력(20점)	참여인력 참여율	참여인력의 인력구성과 참여율 적정성	5
LLOHI/10점\	사업비 규모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5
사업비(10점)	사업비 조달계획	실제 소요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5
합계			100
		'23~'24년 애니메이션 부트캠프 수료 또는 수상 프로젝트	1
가산점(최대 4점)		'22~'24년도 행사 및 시상식에서 수상한 프로젝트 * 수상작 IP(해당 시, 수상작 기업)로 지원 신청 시 * 가점 부여 대상은 [지원안내서 & FAQ] 참고	3

2) 발표평가

- (평가방법) 서면평가 통과한 과제 대상으로 발표평가(질의응답 포함)
- (점수산출) 발표평가 개별 평가위원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을 득한 과제 대상으로 **종합점수(=서면평가 40%+발표평가 60%) 산출하여 고득점 순으로 종합심의 대상 선정**
- (평가기준) 과제기획력(20점), 과제내용(20점), 기대성과(30점), 수행기관(14점) 참여인력(10점) ESG(6점) 총 100점 만점

【발표평가 계량점수 안내】

- o 제출대상 : 발표평가 대상자(* 서면평가 이후 안내)
- o *계량점수1) 수행기관(재무건전성 5점)
- 발표평가 참여자 대상 신용조사 진행 예정으로 <신용조사 정보등록>안내에 따라 기한 내 서류 제출
- 미제출 또는 등록 지연 시 발표평가 참여 불가
- 주관기관 기준으로 발표평가 시 5점 한도 내 배점 적용
 - · AAA~BBB 5점, BB~B 3점, CCC 1점, CC ~ NR 0점
- o **계량점수2) ESG(일자리 창출 2점, 지역기업 3점, 표준계약서 1점)
- 일자리 창출 :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 정성 평가
- 지역기업 : 참여인력 지역 근무 확인서(지정양식) 제출 시 3점, 미제출시 0점
- 표준계약서 :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서(지정양식) 제출시 1점, 미제출시 0점

평가지표		펴기하다	비전
구분지표	세부지표	평가항목	배점
기계기하려셨다자	기획 완성도	기획안의 착수 개시가능 수준의 구체성, 현실성 확보여부	10
과제기획력(20점)	유통 구체성	세부적인 유통계획(플랫폼 활용 등)	10
과제내용(20점)	대중성(상업성)	일반 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	10
파세네공(20점)	경쟁력	시장의 타 작품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	10
	투자 매력도	투자유치 가능성	10
기대성과(30점)	후속발전 가능성	본편 등 발전 가능성	10
	목표 타당성	제시한 목표(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	10
수행기관(14점)	추진의지 및 역량	수행책임자의 과제 수행 의지, 각오	9
구경기단(14급)	재무건전성(*)	기업신용데이터 정보 조회 결과	5
참여인력(10점)	참여인력 참여율	과제에 적절한 인력구성 여부와 참여율 적정성	5
급역한국(10급)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애니메이션 제작) 수행경험 여부	5
	일자리 창출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2
ESG(6점)	지역기업(계량)	참여인력 지역 근무 확인서 제출: 제출 3점, 미제출 0점 * 주관기관의 참여인력(인건비 편성인력) 중 30% 이상이 지역 소재 본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 부여 * 지역기준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	3
	표준계약서(계량)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서 제출 여부 * 미제출 0점, 제출 1점	1
합 계			

3) 종합심의

- (심의방법) 종합점수(=서면평가 40%+발표평가 60%) 고득점 순으로 종합심의(수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등)
- (심의결과) 종합심의(수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등)에 따라 총사업비(=지원금+자(기)부담금) 확정하여 지원규모 내에서 최종 협약대상자 확정하며, 협약 포기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종합점수(=서면 40%+발표 60%) 동점 처리기준 및 종합심의 유의사항】

- ㅇ 종합점수 동점 처리기준
-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에게 우선순위 부여
- · 발표점수도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평가기준 중 배점이 가장 높은 기대성과(30점)에서 고득점한 과제에 우선순위 부여
 - * 구분지표 합계가 동점일 경우 배점이 가장 높은 세부지표에서 고득점한 과제에 우선순위 부여
- o 종합심의 유의사항
- ·종합심의에 따라 협약대상자는 신청 사업비 조정(삭감 등)될 수 있으며, 수행계획서 등 수정을 요청받을 수 있음

지원금 지급

- o 협약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지급 방식(횟수, 금액 등)은 협약 시 추후 안내 예정이며, 월 단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차 지원금 : 확정된 지원금의 70%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지원금의 30%)

지원요건

-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 는 자
 -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 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5.「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

- 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8. 애니메이션 IP 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로 지정되지 않은 프로젝트
- *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로 한국 지분률 30% 미만인 프로젝트
- * 제작완료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미충족하는 프로젝트
- 9. 접수마감일 기준 국내외 방영이 50% 이상인 프로젝트
- 10. 협약일 기준「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애니메이션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자

문의처

- ㅇ 사업문의
 - 애니메이션산업팀(☎061-900-6416, jingyuan@kocca.kr)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성, 반말, 폭언, 욕설 시 문의 대응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발생 시, 공고자료 및 안내 페이지(FAO 등) 우선 확인 바랍니다.

【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안내 페이지】

- o (접속하기) 안내 페이지 이동하기(클릭 이동)
- ㅇ (유의사항)
 - 해당 페이지는 <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안내를 위해 운영하는 임시 페이지입니다.
 - * 임시 안내페이지는 25애니메이션제작지원 공고기간 동안만 운영합니다.
 - 공고 관련 해석상에 차이 발생 시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kr) > 알림마당 > 지원공고] 게시자료를 우선으로 합니다.
 - 해당 페이지 내용에 대한 수정/복제/편집/배포 등의 2차 가공이 엄격히 금지되며, 임의 사용 시 법적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ㅇ 애니메이션산업팀 사업설명회

【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산업팀 사업설명회】

- o (일시) 2025.02.27.(목) 14:15
- o (장소) 광화문 CKL 16층 컨퍼런스 룸
- * (주소)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CKL 기업지원센터 16층
- * 주차 지원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 o (신청) <u>사전 신청하기(클릭 이동)</u>
- * 2025.02.26.(수) ~13:00까지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 바랍니다.
- * 사업설명회에서 시간관계 상 대면 질의응답 시간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사전 신청을 통해 취합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 * 단순 업무 일정(평가 일정, 결과 안내 등)에 대한 문의는 지양 바랍니다.
- o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접속 <u>URL</u>) / 동영상 자료(접속 <u>URL</u>)

콘텐츠금융제도

- o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o [참고] 2025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 *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 : 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업 재무평가를 통해 보증 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 제도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

- o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

[신청/평가]

- o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에서 0점 처리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 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o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 해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o 공모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관련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시행하는 선정절차에 동의하며 성실하게 임해야 함.
- o 공모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선정결과에 대하여 별도 이의신청 절차가 없으며 이의신 청이 불가능함을 숙지하여야 함.
- o 공모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타 지원 과제에 대한 근거 없는 공개적 비방 및 비난 등은 삼가길 바람.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시행한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참여이력(공모, 협약 등)은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협약]

- o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안내받은 기한 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o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며, 서로의 의무 이행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관련: 「콘텐 츠지원사업관리규칙」제6조)
 - 1.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2. 사업비의 관리, 집행 및 정산, 3. 지원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 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기타 사업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o 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5조 및 제15조의2,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체결·관리하여야 함
- o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o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제37조)
- o 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기관에 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관련:「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제42조)
- o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콘텐츠산업진흥법」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ㅇ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활용계획 포함시)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표준계약서 활

- 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와 연계하여 평가 예정임
-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제50조)
- o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 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경구당이서 인정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 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단,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